

● 제285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 
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19. 2. 2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오중석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387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오중석 의원 발의(찬성 김화숙 의원외 9명)
- 나. 제안일 : 2019. 1. 31.
- 다. 회부일 : 2019. 2. 7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음. 이에 유모차의 교부 및 대여 등과 관련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북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을 규정함 (안 제9조제2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.
- 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.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### 1 제안 취지

-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,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28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<sup>1)</sup>에서 제외되어 있어, 유모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가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을 규정함 (안 제9조제2항)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|
|--|--|
| 제9조(비용 감면 등) ①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9조(비용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시장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·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  |

1) 육창 예방용 방식 및 커버 외 27개 품목(참고2)

## 나.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추진 현황

-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 **교부 사업**과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**대여 사업**으로 구분됨.(참고1)

- **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**은 국·시비 지원사업으로 **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8개 품목**<sup>2)</sup>에 대하여 장애종류와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**직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**으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함.

※ '18년 지원실적 : 807명, 245,933천원

- **장애인보조기기 대여 사업**은 권역별(4개소) 장애인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구비하고 있는 보조기기의 임대, 제작 및 수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.

※ '18년 대여실적 : 보유 1,428대, 대여실적 : 5,813건

- 현재 개정 조례안의 유모차의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5조<sup>3)</sup>제1항의 규정에 따라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에는 해당되지만, 교부사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. **다만, 집행부는 보조기기센터를 통하여 대여 및 수리 지원을 하고 있음.**

※ 유모차 보유 및 대여 현황('19.1월기준) : 보유 57대 , 대여 32대

(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별표1)

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

12 개인 이동용 보조기구(ASSISTIVE PRODUCTS FOR PERSONAL MOBILITY)

12 27 07 유모차 및 성인용 운반차 (Prams and buggies)

눕거나 앉은 자세로 1인 이상 탑승하는 보조기구로 추진 및 조종은 보조인이 보조를 해주어야 함. 성인을 이동을 위한 4륜차 등이 포함

2)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 : 28개 품목(참고2)

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5조(장애인보조기구) ① "장애인보조기구"란 장애인의 장애의 예방·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(義肢)·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.

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(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)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.

## 다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

- 유모차는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조제1호4) 및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5)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써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·대여, 수리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음.

### 〈 장애인복지정책과 의견 〉

#### 가. 총괄의견 : 조례개정 필요

-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·대여, 수리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

#### 나. 조항별 검토의견

| 개정안(내용)  |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  | 검토의견<br>(이유, 논거, 의견 포함)  |
|--|--|--|
| ② 시장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·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|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(별표1 - 12 27 07 유모차 및 성인용 운반차) |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(보건복지부고시 2016-15호) 관련 유모차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에 해당되어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례에 명시 |

4)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아동"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 다만,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

5)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(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)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.

### 3 총괄의견

- 장애아동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정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문 전체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기라는 포괄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, (별표로 명시하는 방식이 아닌) 신설 조항에서 장애아동 유모차라는 특정 품목을 삽입하는 것이 전체 조문의 맥락상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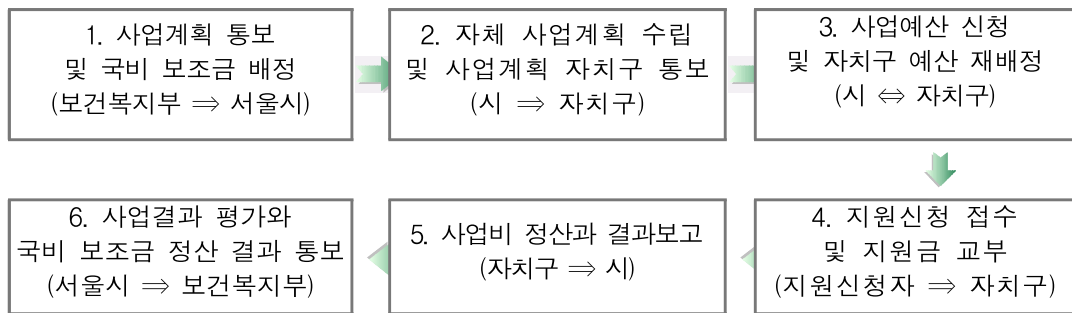
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18조, 동법 제65조
- 사업비('19년) : 294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

□ 사업내용

-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소득수준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  - 장애종류 :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발달·언어장애인
  -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
- 보조기기 품목제한 및 품목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
  - 지원품목 :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을 지원
  - 지원한도 :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른 1인 1품목(참고2)
- 지원흐름도



□ '18년 추진 실적

- 지원 건수 및 지원액 : 807건, 245,933천원



## ② 장애인보조기기 센터 운영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보조기기 관련법 제14조 및 보조기기 관련조례 제5,6조
- 사업내용 : 보조기기 임대, 제작 및 수리 등의 서비스센터 지원
- 사업비 : 1,263백만원
- 보조기기센터(4개소) 위탁 운영

| 구분       | 위탁법인         | 위치(면적)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남보조기기센터 | (재)푸르메       | 강동구 고덕로 201(313.2㎡)    |
| 동북보조기기센터 | (사)한국뇌성마비복지회 |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(299.2㎡) |
| 서남보조기기센터 | (사)한국뇌성마비복지회 |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(253.3㎡) |
| 서북보조기기센터 | (재)푸르메       |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(254.1㎡)  |

- 분야별 보조기기 보유현황

| 구분   | 대여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|    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|
|      | 소계    | 편의시설 | 이동 및 자세유지 | 일상생활 | 컴퓨터 접근 | 의소통 | 기타  |
| 보유수량 | 1,906 | 121  | 591       | 431  | 340    | 80  | 343 |
| 동북   | 478   | 28   | 136       | 103  | 63     | 24  | 124 |
| 동남   | 889   | 42   | 305       | 219  | 162    | 34  | 127 |
| 서남   | 493   | 48   | 135       | 102  | 104    | 16  | 88  |
| 서북   | 46    | 3    | 15        | 7    | 11     | 6   | 4   |

### □ '18년 주요 추진실적

- 서비스 실적 : 연 254,313명, 실 17,092명

※ 유모차 보유 현황 및 대여실적('19.1월말 기준) : 57대 보유, 32대 임대 중

참고2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 현황

| 번호 | 지원품목                   | 기준금액(원)   | 내구연한(년) | 비 고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1  |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       | 350,000   | 3       |        |
| 2  |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        | 350,000   | 3       |        |
| 3  | 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       | 20,000    | 2       |        |
| 4  | 음성시계                   | 20,000    | 2       |        |
| 5  | 시각신호표시기                | 150,000   | 2       |        |
| 6  | 진동시계                   | 30,000    | 2       |        |
| 7  | 보행차                    | 200,000   | 5       |        |
| 8  | 좌석형 보행차                | 200,000   | 5       |        |
| 9  | 탁자형 보행차                | 200,000   | 5       |        |
| 10 |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     | 50,000    | 1       |        |
| 11 | 식사도구(칼-포크), 젓가락 및 빨대   | 50,000    | 1       |        |
| 12 | 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     | 50,000    | 1       |        |
| 13 | 접시 및 그릇                | 50,000    | 1       |        |
| 14 | 음식 보호대                 | 50,000    | 1       |        |
| 15 | 기립 훈련기                 | 1,500,000 | 3       |        |
| 16 | 헤드폰(청취증폭기)             | 120,000   | 2       |        |
| 17 |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        | 800,000   | 2       |        |
| 18 | 문자판독기                  | 800,000   | 2       |        |
| 19 | 목욕의자                   | 600,000   | 5       |        |
| 20 | 녹음 및 재생장치              | 500,000   | 3       |        |
| 21 | 휴대용 경사로                | 300,000   | 8       |        |
| 22 | 이동변기                   | 600,000   | 5       |        |
| 23 | 미끄럼 보드,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| 350,000   | 4       | 17년 추가 |
| 24 | 장애인용의복                 | 150,000   | 2       | 17년 추가 |
| 25 |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| 100,000   | 5       | 17년 추가 |
| 26 |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  | 250,000   | 5       | 17년 추가 |
| 27 | 환경조정장치                 | 400,000   | 3       | 17년 추가 |
| 28 | 대화용장치                  | 600,000   | 4       | 17년 추가 |

### 「장애인복지법」

**제65조(장애인보조기구)** ① "장애인보조기구"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·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(義肢)·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·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,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인등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.
2. "보조기기"란 장애인등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을 향상·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·기구·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,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보조기구의 교부·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

**제8조(보조기기 교부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보조기기 교부·대여 또는 사후관리
2.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

##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아동"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 다만,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
2. "장애아동 보호자"(이하 "보호자"라 한다)란 친권자, 후견인, 장애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3. "장애아동 복지지원"(이하 "복지지원"이라 한다)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, 보육지원,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4. "복지지원 대상자"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5. "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"(이하 "복지지원 이용권"이라 한다)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.

##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」

### 〈별표1〉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

12 27 수동식 대안형 이동수단 (Alternative human powered vehicles)

12 27 07 유모차 및 성인용 운반차 (Prams and buggies)

눕거나 앉은 자세로 1인 이상 탑승하는 보조기구로 추진 및 조종은 보조인이 보조를 해주어야 함. 성인을 이동을 위한 4륜차 등이 포함